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 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시·군간,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관련 실·국장
 2. 부시장, 부군수 중 약간명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 ④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협의회를 대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전까지 도의관련 실국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